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'21.10.26.(화)

책 임 자	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전 요 섭(02-2100-1720)	담 당 자	이지현 사무관(02-2100-1740) 정연수 사무관(02-2100-1787)

제 목 : 2021년 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(FATF) 총회 참석 결과

※ Financial Action Task Force : '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·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, 美·中·日 등 37개국(한국은 '09.10월 가입)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(European Commission), 걸프협력회의(Gulf Cooperation Council) 등 39개 회원

※ 금번 보도자료는 FATF 사무국이 공개한 제32기 제5차 총회('21.10.19~10.21) 결과 언론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.

참고로, FATF는 회원국이 총회 결과를 공개할 경우 FATF가 공개한 브리핑 내용에 한해 언론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◇ FATF 총회 개최 개요

○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(FATF) 제32기 제5차 총회가 '21.10.19(화) ~ '21.10.21(목)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됨

◇ 주요 논의 내용

❶ 가상자산/가상자산사업자 관련 논의

* 가상자산 관련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 채택

❷ 국경간 결제(Cross-border payment) 활성화

* 국경간 결제에 대한 국제기준 이행 관련 설문조사 최종보고서 채택

❸ 기업의 실소유자 정보 관련 FATF 국제기준 강화

* 국제기준, 주석서, 용어사전의 개정안에 대한 민간자문 진행 승인

❹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

* (이란·북한)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에 유지 / (보츠와나·모리셔스)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에서 제외 / (요르단·말리·터키)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에 추가

❺ 기타 논의사항

* FATF국제기준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완화 1단계 점검보고서 및 자금세탁 분야의 디지털 전환 1단계 최종보고서 채택, 환경범죄 관련 FATF용어사전 개정 등

【논의결과❶】 가상자산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 채택

□ FATF는 '19.6월 **가상자산(VA)/가상자산사업자(VASPs)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***를 발표하고, 이후 각국의 이행현황 점검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**동 지침서를 개정**하였습니다.

* VA/VASPs에 대해서도 자금세탁/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고, 위험에 상응하는 경감조치들을 취하도록 하는 '위험기반접근법'을 적용하기 위한 지침서

□ 개정된 지침서는 ①**가상자산/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**, ②**가상자산 P2P거래**의 **위험** 및 위험의 **식별·완화방안**, ③**가상자산사업자의 면허·등록**, ④**트래블룰**, ⑤**감독기관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원칙**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

○ FATF는 향후에도 **스테이블코인[1)], P2P, NFT[2)], De-Fi[3)]**를 포함하여 **가상자산/가상자산사업자 부문의 변화**를 **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**이라고 밝혔습니다.

* 1) 특정자산 또는 자산 풀에 비례해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
2) 대체불가능토큰(Non-fungible token) :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고유 인식값을 부여하여 상호교환이 불가능한 토큰
3) 탈중앙화금융(Decentralised finance) :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되는 분산화된 금융 시스템

□ FATF는 개정 지침서를 **10.28일 발표할 예정**입니다.

【논의결과❷】 국경간 결제에 대한 설문조사 최종보고서 채택

□ **국경간 결제(Cross-border payment)의 효율성 개선**은 **G20의 최우선 과제** 중 하나이며, G20는 '20년 재무장관·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지급결제 활성화를 위한 **로드맵을 승인**한 바 있습니다.

○ FATF는 동 **로드맵의 일환**으로, 국가별 **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(AML/CFT) 관련 법·제도**가 **국경간 결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부분**을 민간 **설문조사**를 통해 파악하고 **설문조사 최종보고서를 채택**하였습니다.

□ 해당 보고서는 **AML/CFT에 위험기반 접근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, 일관성 없이 이행**되고 있는 점이 국경간 결제의 **비용을 증가**시키고 **속도와 투명성을 저해**하며,

○ 고객 및 실소유자 식별 및 확인, 표적화된 금융제재(targeted financial sanction) 스크리닝, 고객 및 거래정보 공유, 환거래 은행 관계 구축 및 유지 등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□ **FATF**는 국경간 결제 문제에 대해 **이해관계자와 협력을 지속할 예정**임을 밝혔으며, 위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**10.22일 발표**하였습니다.

【논의결과❸】 실소유자에 대한 FATF 국제기준 강화

□ FATF는 **판도라 문건***에서 볼 수 있듯이 **복잡한 기업구조를 활용한 범죄행위 및 범죄수익 은닉**을 **방지**하기 위해 **기업의 실소유자 정보에 대한 투명성 보장이 중요**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.

* '21.10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(ICIJ)가 전세계 유명 인사들의 자금세탁과 부정축재 실태 등을 폭로한 문건

□ FATF는 **기업의 실소유자 정보에 대한 국제기준을 강화**하기 위하여 국제기준, 주석서 및 용어사전의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, 이번 총회에서는 **개정안*에 대한 민간자문을 진행**하는 것을 **승인**하였습니다.

* ①실소유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다각적 접근법(multi-pronged approach) 활용, ②무기명주식 및 명의 관계(nominee arrangements)의 악용방지 방법, ③위험기반접근법, ④권한당국의 정확하고 적절한, 최신 실소유자 정보에의 접근 등

【논의결과❹】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

□ FATF는 각국의 FATF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, 그 중 ①중대한 결함이 있어 **'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'** 및 ②제도상 결함을 치유 중인 **'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' 명단**을 **매 총회**마다 **공개**합니다.

○ 이번 총회 결과, ‘**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**’ **명단**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**이란**과 **북한** 두 국가가 포함되었으며,

○ 기존 ‘강화된 관찰대상 국가’였던 **22개국 중 20개국**은 **현행 유지**하고, **2개국(보츠와나, 모리셔스)은 제외, 3개국**(요르단, 말리, 터키)은 ’**강화된 관찰대상 국가**‘에 **새롭게 추가**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<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>

종 류		내 용	국가
❶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	대응조치 (Counter-measure)	사실상 거래중단,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	이란 북한
	강화된 고객확인 (Enhanced due diligence)	자금세탁방지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에 강화된 고객확인	없음
❷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		자금세탁방지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	23개국*

* (현행유지) 알바니아, 바베이도스, 부르키나파소, 캄보디아, 케이만군도, 아이티, 자메이카, 몰타, 모로코, 미얀마, 니카라과, 파키스탄, 파나마, 필리핀, 세네갈, 남수단, 시리아, 우간다, 예멘, 짐바브웨

(신규추가) 요르단, 말리, 터키

【논의결과❺】 기타 논의사항

□ 그 외에 FATF 국제기준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완화하기 위한 1단계 점검보고서 채택(10.22 발표), **자금세탁방지 분야의 디지털 전환 1단계 최종보고서 채택** 및 요약본 발표 승인(10.27 발표예정), **환경범죄** 대표예시를 추가하는 **FATF 용어사전**의 **개정**을 **승인**하였습니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붙임 **FATF (Financial Action Task Force) 개요**

□ 설립 목적

○ **UN 협약*** **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**와 관련된 **금융조치**(Financial Action)의 **이행**을 위한 **행동기구**(Task Force)로서 **'89년** 설립

* 비엔나 협약('88, 마약), 테러자금 조달 억제에 관한 UN협약('99), 팔레르모 협약('00, 조직범죄), 메리다 협약('03, 부패) 등

○ **마약자금**('89)에서 **중대범죄의 자금세탁**('96), **테러자금조달**('01), **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**('12) 방지로 관할범위를 **지속 확대**

□ 주요 기능

○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**자금세탁·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**하기 위하여 **국제기준**을 **마련**하고, **각 국가**의 **이행 현황**을 **평가**

○ **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**에 대한 **금융제재 결정**

○ **자금세탁·테러자금조달 수법 등**에 대한 **연구, 대응수단 개발** 등

□ 운영 방식

○ **총회**(Plenary), **운영위원회**(Steering Group), **5개 실무그룹**(Working Group)으로 운영되며, **연 3회 총회 개최**를 원칙으로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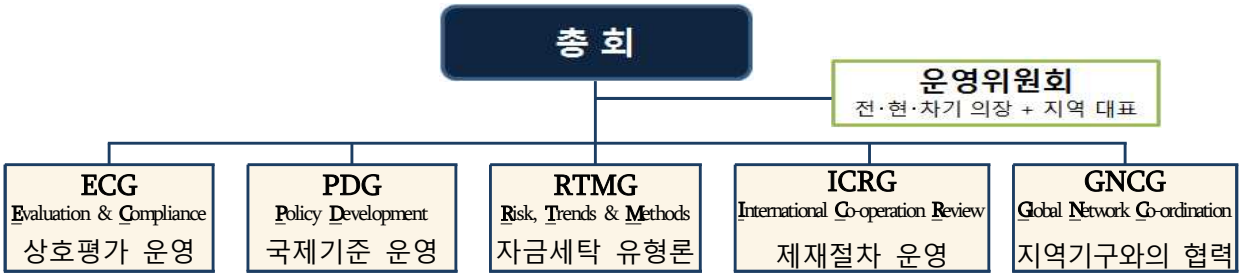

□ 회원 구성

○ **정회원**(37개국+2기구), **준회원**(9개 지역기구), **옵저버**로 구성

- 이외에도 FATF 산하 **9개 지역기구**(FATF Style Regional Body)를 통해 **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관할** * 북한도 아태지역기구에 옵저버 가입

○ 우리나라는 **'98년 아태지역기구***(APG), **'09년 FATF** 정회원 가입

* 41개 회원국 및 37개 옵저버(9개국 + APEC·ADB 등 28개 국제기구)